



CEO Report

보험회사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 책무구조도 도입을 중심으로

양승현·박정희

CEO Report

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집중 분석하여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책무구조도를 마련토록 하고 대표이사 및 주요 임원에게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2024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개정 법률은 개별 임원의 책임영역을 사전에 확정함으로써 규제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의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내부통제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함

개정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는 ① 금융회사 내 각 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할 임원을 지정하고, ② 이를 문서화(책무구조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며, ③ 임원의 책무 수행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함. 대표이사 및 책무구조도상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지며, 위반 시 신분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나, 위반행위 발생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 제재를 감경·면제받을 있음. 아울러 이사회는 내부통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에 내부통제 정책의 수립·감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내부통제위원회를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격상함

개정 법률이 그 취지에 따라 금융회사의 자율성과 책임성 있는 내부통제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내용과 지침 등이 합리적이고 명확하여야 함. 첫째, 특정 업무분야 책임자가 여럿인 경우 책무 담당 임원을 중복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책무구조도 재제출 요건인 '기재내용 변경'의 범위는 행정적 부담을 고려해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하며,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관리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합리적 개선이 필요함. 둘째,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담하는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 및 '임원에 준하는 직원'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임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들이 갖추어야 할 전문성, 신뢰성 등 적극적 자격요건의 의미와 판단기준이 제공되어야 할 것임. 아울러 제재 감면 요건인 '상당한 주의'의 판단기준에 관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의 지침, 모범사례 등을 통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셋째, 책무의 세부내용, 책무기술서 세부 작성 방법, 책무체계도 구성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이나 모범안, 작성례 등을 통해 제도 도입 초기 어려움을 완화하고 원활한 제도 정착을 도와야 함. 끝으로 회사 규모와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해 책무구조도 마련·제출과 관련된 의무를 완화 또는 적용 제외하는 등 규제의 비례성 및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I

검토 배경

- 금융감독당국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잇따른 금융사고에 대응하여 2023년 6월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함
 - 개선방안은 해외 주요국의 개인책임성제도, 특히 영국의 제도¹⁾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책무구조도 (Responsibilities Map)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이사회 역할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함
 - 금융회사가 사전에 개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각 임원이 책임의식을 갖고 금융사고 방지 등 내부통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이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라 함) 개정안이 2023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 7월 3일부로 시행²⁾을 앞두고 있음
 - 개선방안은 (i)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 마련·제출 의무, (ii) 임원 및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iii) 제재 및 책임감면, (iv)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역할 강화를 위한 근거규정을 담고 있음
 - 법률의 위임사항을 담은 하위법령은 확정 전이나, 입법예고된 개정안³⁾을 통해 제도 윤곽을 짐작해 볼 수 있음

- 개정 법률이 그 취지에 따라 금융회사의 자율성과 책임성 있는 내부통제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내용과 지침이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본고에서는 이를 위해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여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고, 선도적으로 개인 책임성제도를 도입한 영국, 호주,⁴⁾ 싱가포르⁵⁾와의 비교검토를 통해 국내 적용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1) 영국의 고위관리자 및 인증제도(Senior Management & Certification Regime; SM & CR 제도)는 2016년 은행으로 시작해 2018년 보험회사로 확대되었고, 현재는 모든 금융회사에 대해 시행 중임

2) 법률 제19913호; 이하 '개정 법률'이라 함

3) 개정 법률에 따른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2024년 2월 입법예고된 데 이어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이 4월 규정변경예고됨. 이후 5월 시행령 개정안이 재입법예고된 후 6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바, 이하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5월 재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안'이라 함)을 기준으로 서술함

4) 2018년 도입된 은행임원책임제도(Banking Executive Accountability Regime)를 대체해 2024년부터 보험회사를 포함해 금융업권 전반에 적용되는 금융책임성제도(Financial Accountability Regime; FAR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5) 싱가포르 개인책임성제도는 통화감독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의 개인책임성 및 행동에 관한 지침(Guidelines on Individual Accountability and Conduct; IACG) 및 관련 질의응답서(Frequently Asked Questions(FAQs) on Guidelines on Individual Accountability and Conduct; FAQs)에 따라 2021년부터 시행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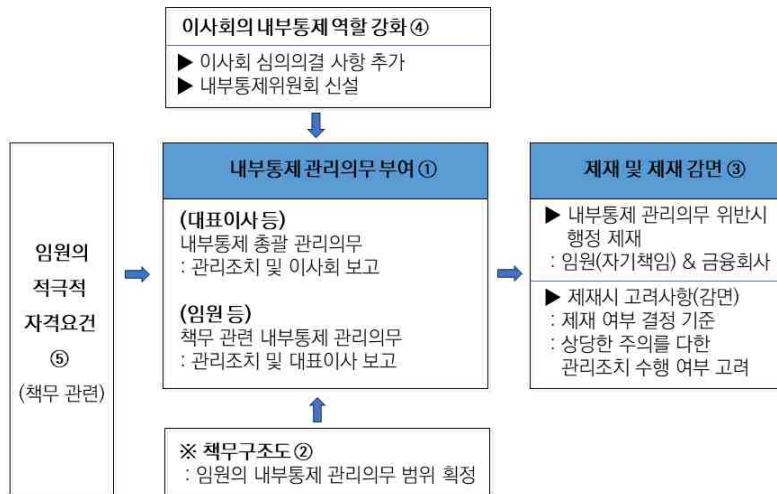
II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

1. 개요

- 개정 법률은 금융회사의 책임성 있는 내부통제제도의 운영과 임직원의 내부통제 인식 개선을 위해 (i) 책무구조도를 도입하여 금융회사 임원의 책임영역을 사전에 확정하고, (ii) 대표이사 및 각 임원에게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하며, (iii)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와 감사역할을 강화함
 - 아울러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 및 제재 감면에 관해 규정함

〈그림 1〉 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체계



자료: 국회 정무위원회(2023), p. 10

- 개정 법률은 기본적으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모든 금융회사를 적용 대상으로 하지만, 영위하는 금융업무 및 자산규모에 따라 적용 시기를 달리함

〈표 1〉 보험회사 개정 법률 적용례 및 경과조치

구분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자산총액 5조 원 미만
시행일	2024년 7월 3일	
임원 자격요건 적합여부 확인·공시·보고	최초 책무구조도 작성·제출 후 선임·직책 변경되는 임원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개정 법률 시행 이후 최초 소집되는 주주총회일부더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최초 책무구조도 작성·제출한 경우부터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개정 법률 시행 이후 최초 소집되는 주주총회일까지	
책무구조도 마련·제출	개정 법률 시행 이후 1년 이내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2년 이내

2. 책무구조도 마련·제출 의무

- 금융회사의 대표이사(집행임원을 둔 경우는 대표집행임원, 외국 금융회사 국내지점은 그 대표자, 이하 같음)는 금융회사 내 각 책무에 대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이하 '내부통제등'이라 함) 의무를 이행할 임원을 지정하고, 이를 문서화(책무구조도)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함(법§30의3)
 - 아울러 책무구조도상 임원은 책무 수행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등 적극적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법§5③)
-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임원은 (i) 금융회사의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을 포함하고, (ii) 금융회사 자산규모, 직책 특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을 제외하거나 직원을 포함함(법§30의2①)
 - (임원의 범위) 입법예고안은 이사회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를 임원의 범위에서 제외함(시행령안§25의2①)
 - 직원 중에서는 직원 신분의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 및 '담당 업무에서 임원에 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해당 부서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없는 경우)이 책무구조도상 임원에 포함됨(시행령안§25의2②, 감독규정안§14의2)
 - (적극적 자격요건 확인) 임원의 선임, 직책 변경, 책무의 변경·추가 시 임원이 책무 수행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공시 및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함(법§5③, §7①, ②, 시행령안§8의2)
 - 개정 법률은 전문성, 업무경험 등 각 요건의 의미에 관해 정의 규정을 두거나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음
 - 금융회사는 임원 선임 등 보고 서식에 임원이 책무를 수행하기 적합하다고 판단한 사유 및 근거를 요건별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함(감독규정시행세칙안 별지1, 별지1의3)

- **책무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법, 형법 기타 금융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법§30의3①)**
 - (금융관계법령등)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호제7호의 금융관계법령과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합하여 금융관계법령등이라 함
 - 시행령안은 금융관계법령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 14개 법률을 추가하고, 금융 관련 법령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을 신설함(§5, §25의3①)
 - (책무) 시행령안은 책무를 (i) 특정 책임자를 지정하여 수행하는 업무, (ii) 금융업 관련 사업 부문별 업무, (iii) 금융업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업무와 각 관련된 내부통제등의 집행 및 운영 책임으로 정의하고, 아래와 같이 열거함(시행령안§25의3②, [별표 1])
 - 지정 책임자 관련 책무: 책무구조도 마련·관리, 내부감사, 위험관리, 준법감시, 자금세탁방지, 내부회계관리, 정보보안 등 열거된 책무 및 그 밖에 금융관계법령등에 따른 책무임
 - 금융영업 관련 책무: 보험상품개발, 보험계리, 보험계약체결, 보험계약인수, 보험계약관리, 보험금지급, 재보험 등 열거된 책무 및 그 밖에 금융관계법령등에 따른 책무임
 - 경영관리 관련 책무: 전략기획, 인사·교육, 보수, 자산운용, 건전성 관리, 재무관리, 공시, 업무위수탁, 광고, 자회사·영업점·판매채널 관리 등 열거된 책무 및 그 밖에 금융관계법령등에 따른 책무임
 - 금융회사는 위 책무를 조직, 업무특성, 업무범위 등에 맞게 세분·병합하는 등 조정할 수 있음
 - (책무의 배분)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는 누락·중복되지 않도록 책무를 배분하여야 하고(법§30의3②), 책무 배분 시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책무구조도를 마련하여야 함(시행령안§25의3③)
-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는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담하는 임원 및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문서, 즉,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법§30의3)**
 - (책무구조도 마련) 책무구조도는 (i) 임원별로 책무의 상세내용을 기술한 책무기술서 및 (ii) 임원의 직책별 책무체계를 일괄 파악할 수 있는 도표인 책무체계도로 구분·작성함(감독규정안§14의3②)
 - 책무기술서에는 소관부서, 겸직 여부, 유관법령 등을 포함한 임원 및 직책의 기본정보, 책무의 상세 내용 등이, 책무체계도에는 임원별 성명, 직책, 책무명 등이 포함되어야 함(동항4., 5.)
 - 책무기술서와 책무체계도의 내용은 일치해야 하고, 각 책무는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책무체계도는 임원의 책무 현황을 일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식화하여 작성함(동항2., 3.)
 - (책무구조도 제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마련한 책무구조도는 이사회 의결일⁶⁾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법§30의3③, ④)

⁶⁾ 외국 금융회사 국내지점은 국내지점 대표자가 참여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의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책무구조도 기재내용 중 책무를 배분받는 임원, 직책, 책무 변경 또는 책무 추가 시 같은 요건·절차를 거쳐 재제출하여야 하나(동조⑥) 임원 직책 명칭의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은 제외함(시행령안§25의3⑤)
- 제출된 책무구조도에 형식 미비, 중요사항 누락, 불분명한 기재, 오류 또는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정·보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법§30의3⑤, 감독규정안§14의3①)

3. 임원 및 대표이사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 금융회사의 임원은 자신의 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관리조치를 하여야 하고,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전반적 집행 및 운영 최종 책임자로서 총괄적인 관리조치를 실효성 있게 해야 함(법§30의2, 시행령안§25의2③, 법§30의4, 시행령안§25의4③)
 - 임원은 (i) 관리조치의 내용과 결과, (ii)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내부통제등 관련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대표이사는 (i), (ii) 및 (iii) 임원 보고사항 중 중요사항을 이사회에 각 보고해야 함(법§30의2②, §30의4②)

〈표 2〉 임원 및 대표이사가 이행해야 하는 관리조치의 내용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대표이사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1. 법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등(‘기준’) 적정성 점검	1. 내부통제등 정책·기본방침 및 전략 집행·운영
2. 기준의 효과적 집행·운영점검	2. 임직원의 법령·기준 등 준수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 및 지원의 적정성 점검
3. 임직원의 법령·기준 등 준수 점검	3. 임직원의 법령·기준 등 위반사실 적시 파악을 위한 제·신고 등 관리체계 구축·운영
4. 1.~3. 점검 과정에서 알게 된 위반사항·미비점에 대한 시정·개선 등 필요한 조치	4. 각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의 적절한 수행 여부 점검
5. 4.의 조치 이행 여부 점검	5. 임직원의 법령·기준 등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 점검
6. 임직원의 법령·기준 등 준수를 위한 교육·훈련 등 지원	6. 임직원의 법령·기준 등 위반의 장기화·반복, 조직적·광범위한 위반 방지를 위한 조치
7. 법령·기준 등 위반사실 또는 내부통제 미흡사항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임직원 조사 및 제재조치 요구	7. 관리조치 과정에서 알게 된 법령·기준 등 위반사항·미비점에 대한 시정·개선 등 필요한 조치
	8. 7.의 조치 이행 여부 점검

-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 중 5호의 ‘임직원의 법령기준등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취약 분야’ 및 6호의 ‘위반의 장기화, 반복, 조직화 또는 확대 방지조치’는 아래 표와 같음

〈표 3〉 잠재적 위험요인·취약분야 및 위반 장기화·반복·조직화·확대 방지조치

구분	내용(시행령안§25의4①, ②)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가 신규 추가되는 등 사유로 내부통제기준등의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 • 내부통제등과 관련하여 임원 담당 업무 간 또는 임직원과 소속 금융회사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 금융회사의 특정 사업 부문 또는 취급 상품과 관련된 자산 또는 영업수익의 급격한 변동 또는 이상 징후가 있는 사항 • 복수의 임원이 보고한 동일 또는 유사한 내부통제등에 관한 사항 • 특정 사업부문 또는 취급상품 관련 임직원 성과보수체계나 성과평가지표를 신설 또는 상당한 수준으로 변경·조정하는 경우 해당 성과보수체계 또는 성과평가지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위반이 장기화, 반복되거나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사실을 알게된 경우 다음의 조치 • 해당 위반행위와 연관된 다른 임직원이 있는지 여부 점검 •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 발생가능성 여부 점검 •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 특정 임직원이 동일·유사 업무를 장기간 수행함에 따라 발생가능한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행위가 본점 여러 부서, 지점 기타 영업소에 걸쳐 발생할 가능성 점검 •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4. 제재 및 책임감면

○ 책무구조도상 임원 또는 대표이사가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해임요구,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신분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음(법§35의2①)⁷⁾

- 다만, (i) 임직원의 법령 또는 기준 등 위반행위의 발생 경위, 정도와 그 결과 및 (ii) 위반행위 발생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해 의무를 수행했는지 고려해 감경·면제할 수 있음(법§35의2②)

〈표 4〉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

개정 법률
<p>제35조의2(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임원이 제30조의2를 위반하거나 대표이사 등이 제30조의4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조치(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치는 제외한다)를 할 수 있다.</p> <p>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재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행위의 발생 경위, 정도와 그 결과 2.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제30조의2 또는 제30조의4에 따른 관리의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p>③ <생략></p>

⁷⁾ 직원인 업무집행책임자에 대해서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의 요구가 가능함(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 임직원에게 제재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제재가 가능함(법 제35조의2 제3항)

- 이 밖에 책무구조도상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임원 선임 등 관련 공시·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내부통제위원회 심의·의결 관련 의무나 책무구조도 마련·제출 등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도 제재조치가 가능함(법§34, §35, [별표])
 - 아울러 (i)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책무구조도를 마련한 경우, (ii) 임원의 선임 등 사실 및 적격성 여부 등에 관한 공시·보고를 미이행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iii) 금융위원회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법§43①22의2.,②1의2.,8의2.)

5. 이사회와 내부통제 역할 강화

-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에 내부통제등 정책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법§15①5의2.) 대표이사 및 관련 경영진으로 구성되던 내부통제위원회를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격상함(법§16①5.,§22의2)
 -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i) 감사위원회나 위험관리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통합운영할 수 있고(법§16③) (ii) 기능 일부(대표이사·임원의 관리조치·보고 수행 여부에 대한 점검·평가 및 필요 조치 요구)를 감사위원회나 위험관리위원회가 담당하게 할 수 있음(법§22의2,시행령안§17의2)

〈표 5〉 개정 전·후 내부통제위원회 비교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위원장	대표이사	사외이사
구성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및 내부통제 관련 업무 담당 임원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
법적 근거	시행령 및 감독규정	법률
역할/권한	내부통제 점검결과 공유, 임직원 평가 반영 등 개선 방안 검토, 내부통제 취약부분에 대한 점검 및 대응 방안 마련 등	(심의·의결) 내부통제 기본방침·전략수립, 윤리·준법 의식제고를 위한 기업문화 정착방안, 지배구조내부 규범 마련·변경, 내부통제기준 제·개정 등

자료: 국회 정무위원회(2023), p. 35의 표를 토대로 수정 작성함

6. 검토

-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제도 도입 취지에 비추어 개선이 필요하거나, 규제 내용에 불명확성이 존재하거나 그 밖에 수범자의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세부 기준이나 지침이 필요한 사항 등이 존재함

- 합리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개정 법률은 특정 책무에 담당 임원을 복수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나, 실질적으로 특정 업무분야 책임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의 기재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마련 시와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다시 제출해야 하는바, 규제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변경'의 범위를 적절히 제한해야 함
 - 아울러 개정 법률은 수범자의 관리의무 위반이 성립됨을 전제로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 제재를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나, '상당한 주의'로 의무를 이행했다면 애초에 위반이 없는 것으로 보거나, 반드시 제재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함
 -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담하는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 및 '임원에 준하는 직원'의 범위 내지 판단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임원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감독당국의 법령해석이나 지침 등으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개정 법률은 책무구조도상 임원이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할 뿐 각 요건의 의미를 규정하거나 판단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추가적 해석이나 지침이 필요함
 - 제재 감면 요건인 '상당한 주의'를 다한 의무이행에 관한 판단기준 역시 규정이 없고 위임근거를 두고 있지도 않은바, 금융감독당국의 지침, 모범사례 등을 통해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그 밖에 새로운 제도의 도입 시점에서 금융회사들은 책무구조도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책무의 세부내용, 책무기술서 세부 작성 방법, 책무체계도 구성 방법 등에 관해 지침이나 모범안, 작성례 등을 통해 원활한 제도 정착을 도울 필요가 있음
- 다음 장에서는 (i) 대상 임원의 범위, (ii) 적극적 자격요건 판단기준, (iii) 책무의 판별 및 분할·공유, (iv) '상당한 주의'를 다한 관리의무 수행의 판단기준 및 (v) 차등적 규제 필요성에 관해 해외 주요국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얻어보기로 함

III

해외 주요국 제도 및 시사점

1. 대상 임원의 범위

가. 사외이사

○ 비집행이사⁸⁾의 대상 임원 포함 여부에 관해서 호주, 영국, 싱가포르는 모두 다른 태도를 취함

- 모든 비집행이사를 포함하는 호주는 효율적인 책임성 체계 마련에 대한 비집행이사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반면, 모든 비집행이사를 제외하는 싱가포르는 금융회사의 상시 업무를 운영하는 집행임원들에게 규제 자원을 집중하고자 함(ACG 1.6)
- 영국은 비집행이사 중 이사회 내지 이사회 내 위원회 의장을 맡은 경우만 대상 임원에 포함하여 양자 간에 절충적 태도를 취하는데, 이는 규제 비례성을 확보하고 규제 목적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개인들에게 규제 자원을 집중하기 위한 것임(FCA 2018)

〈표 6〉 비집행임원 포함 여부

구분	비집행임원 포함 여부	비고
영국	이사회 의장·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장만 포함	• 규제 비례성 확보 및 규제 자원 집중을 위한 것임 • 여타 비집행이사도 감시건제 책임이 있으므로 행동규범 및 적격성 요건은 적용됨
호주	모든 비집행이사 포함	• 일상적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책임성의 성격은 집행이사와 다름(책임성 내재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전파, 유의미한 회의 참여·건설적 문제제기 등)
싱가포르	모든 비집행이사 제외	• 금융회사 업무의 일상적 관리를 책임지는 고위관리자에 초점을 둠

○ 국내에서도 대상 임원에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장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는지 입법적 논의가 필요함

- 시행령안은 책무구조도상 임원에서 사외이사를 모두 제외하면서도 예외적으로 내부통제에 궁극적 책임을 지는 의사회 의장은 포함하여 영국과 유사하게 절충적 입장을 취함
- 이러한 태도는 제도 도입 시점에서 모든 사외이사로 대상 임원을 확대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고, 사외이사는 별도의 적극적 자격요건 및 상법상 감시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일응 타당하다고 봄

⁸⁾ 비집행이사(Non-Executive Director)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사외이사 및 기타 비상임이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됨

- 다만, 개정 법률이 내부통제에 대한 이사회 역할의 강화를 취지 및 영국의 사례를 고려하면 이사회 의결사항 중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전반 관련 사항을 위임받아 감시역할을 수행하는 내부통제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는 이사회 의장과 동일한 책임성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나.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

○ 3개국 모두 모회사나 외국 보험회사 지점의 본사 임원이 대상 임원에 포함되는 경우를 상정함

- 영국은 모회사 등 임원이 '회사 업무 관리·수행에 중대한 영향력'을 가질 것을 요하고(PRA Rulebook Insurance – Senior Management Functions), 지점 관련 책임은 전략 수립에 그치지 않고 '전략의 실행'을 책임지는 최고위 임원에 배분하도록 함(FCA Handbook SYSC 26.8.3G)
 - 호주와 싱가포르 또한 '대상 회사의 관리통제'에 관해 고위집행책임을 가져야 한다거나(Financial Accountability Regime Act ("FARA") §10(1)), 실제 감독책임 내지 의사결정권한을 반영하도록 함(IACG 1.2(ii))

〈표 7〉 다른 회사 임원 포함 여부 및 판별기준

구분	다른 회사	판별기준
영국	그룹 고위관리자/ 지점 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 업무를 관리 또는 수행하는데 중대한 영향력을 갖는 모회사 등 임원 • 지점 관련 책임은 지점의 전략 실행을 책임지는 최고위 임원에 배분
호주	모회사/지점 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회사의 관리·통제 등에 관해 고위집행책임을 갖는 모회사 임원 • 호주 내 지점 관련 책임을 갖거나 직책을 보유하는 경우 본사 임원
싱가포르	그룹 단위 적용/지점 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감독책임, 의사결정권한 반영 • 지점 관련, 싱가포르 내 일상적 운영의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중시

○ 개정 법률에 따른 '다른 회사의 임원'은 금융회사에서 내부통제가 요구되는 업무분야에 관해 실질적 권한을 갖고, 관리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자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바, 향후 법령해석, 지침 또는 입법적 조치를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개정 법률이 책무구조대상 임원 범위에 '다른 회사 임원'을 포함할 수 있게 한 것은 지주회사의 임원이나 외국 금융회사 본사 임원 등이 각 자회사 또는 지점 업무에 관여하여 금융사고 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응 타당하다 사료됨
 - 다만 개정 법률의 문언은 그 기준을 '해당 회사의 책무에 사실상 영향을 미치는 임원'이라고만 규정해 구체적 범위를 알기 어렵고 지나치게 확대해석될 우려가 있음
 - 예컨대 지주회사나 외국 금융회사 본사 외에 계열이나 지분 또는 거래관계에 있는 여하한 회사를 포함하는지, '사실상 영향력'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즉, 의사결정 권한이나 집행 권한 없이 조언이나

- 권고, 전략적 방향성 제시 등에 그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될 수 있음
- 개정 법률의 취지 및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를 고려할 때, '다른 회사의 임원'은 금융회사에서 내부통제가 요구되는 업무분야에 관해 실질적 권한을 갖고, 관리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자여야 할 것임
 - 금융감독당국의 법령해석 내지 지침으로 (i) 다른 회사의 의미를 보다 구체화하고, (ii) 단순 조언, 권고, 방향성 제시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사실상 영향력'의 의미를 제한(의사결정·집행 권한 존재 등)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아울러 향후 입법으로 (iii) '사실상'이라는 표현보다 영국의 경우와 같이 '중대한'이라는 문언을 사용하는 것이 지나친 확대해석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임

다. 임원에 준하는 직원

- 영국, 호주, 싱가포르의 공통적으로 대상 임원을 판별함에 있어 특정 업무영역을 관장하는 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직급에 있을 것을 요구함
 - 영국은 '고위관리기능'이라는 개념을 통해 최고경영진을 대상 임원으로 열거하고, 지정책임 분배 시 관련 임직원 중 최상위자에 배분토록 하며, 총괄책임은 특정 책임영역을 관리·감독할 궁극적 책임이 있고 이사회에 설명·보고하는 자에게 배분토록 함(FCA Handbook SYSC 24.3.1G, 26.7.2G)
 - 호주와 싱가포르 또한 조직 내 직급 내지 보고체계상 서열 등을 고려하여 최상위자를 지정하게 함(APRA·ASIC 2024a, FAQs)

〈표 8〉 특정 업무분야에 관여하는 여러 주체 중 대상 임원 판별기준

구분	판별기준	고려사항
영국	최고경영진 열거 + 최상위 임원에게 책임 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책임: 해당 분야를 관리하는 임직원 중 최상위자에 배분 • 총괄책임: 이사회/CEO 아래서 특정 책임영역을 관리·감독할 궁극적 책임을 지고, 이사회에 설명·보고하며 안건을 올릴 기본적·직접적 책임 → 규정에 사례별 판단지침 제시
호주	집행책임을 부담하는 최상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운영 방식과 실제 책임소재를 고려 자율적으로 지정 • 권한이 낮은 임직원을 지나치게 많이 등록하면 책임성이 희석돼 부적절
싱가포르	핵심기능의 일상적 관리를 주로 책임지는 최고위 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내의 직급 및 보고체계상 서열 등 고려 • 통상 고위관리자는 CEO/이사회에 직접 보고, 하급자 지정은 부적절

- 감독규정안에서 책무구조도상 임원에 포함하는 '임원에 준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수행에 충분한 직급·자원·권한을 가진 자여야 할 것이므로 규정 또는 법령해석, 지침 등으로 그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감독규정안에서 '임원에 준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임원의 범위에 포함한 것은 금융회사가 실제로 맞게 인력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지만, 내부통제등 관리의무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는 책무구조도상 임원이 충분한 직급·자원·권한을 보유할 필요가 있음
 - 책무구조도상 임원에 포함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감독규정 또는 법령해석, 지침 등으로 업무 집행권한 및 책임관계, 보고·감독관계 등을 포함해 범위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2. 적극적 자격요건 판단기준

○ 영국은 SM & CR 제도에 따라, 호주 및 싱가포르의 별도 법령·규제에 따라 적격성 요건(Fit & Proper)을 규정함

- 영국은 임직원 적격성 요건을 (i) 정직성, 성실성 및 평판, (ii) 역량, (iii) 재정적 건전성을 통해 판단하며(FCA Handbook FIT 1.3.1B 및 PRA Rulebook Insurance - Fitness and Propriety)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을 감독규정에 상세히 열거함
- 호주 FAR 제도와 싱가포르 IACG에는 적격성 요건이 없지만, 대상 임원은 대개 별도 법령·규제에 따라 적격성을 충족해야 하고,⁹⁾ 적격성 요건의 판단을 위해 상세한 지침을 마련¹⁰⁾하고 있음

〈표 9〉 적격성 요건 및 판단 시 고려사항

구분	적격성 요건	판단 시 고려사항
영국	정직성, 성실성 및 평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 관련 형사범죄 전력, 민사소송 및 여하한 행정제재, 민원 등 폭넓게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 범죄전력만으로 당연히 부적합한 것은 아니며 혐의 심각성, 직책관련성, 시간경과 등 두루 고려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 가능 관련 훈련·전문성 요건 충족, 충분한 경험·훈련, 책임충족에 적합한 시간 확보 등
	재정적 건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상환부채, 파산절차 등 • 단순한 자산 부족만으로 요건 충족이 부정되지는 않음

○ 국내에서도 책무구조도상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의 의미나 판단기준 등에 대해 입법이나 감독당국 지침 등을 통해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⁹⁾ 호주의 경우 건전성 규제의 일환으로 규제 대상 회사의 이사회에 '책임자(Responsible Person)'의 적격성(Fitness & Propriety)을 보장하도록 규정하며, 싱가포르의 금융권역별 법률(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보험법(Insurance Act 1966) § 35(4) 및 (5))에서 임원 선임 시 적격성 확인 및 사전 승인에 관해 규정함

¹⁰⁾ 호주는 APRA의 Fit and Proper Prudential Standard (CPS520) 및 관련된 Prudential Practice Guides, 싱가포르의 Guidelines on Fit and Proper Criteria [FSG-G01]를 말함

- 개정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는 임원이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판단사유 및 근거를 요건별로 기재해야 하나, 각 요건의 의미나 판단기준 등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제도 도입 초기 해석·적용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영국 등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의 각 의미, 판단기준 및 근거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3. 책무의 판별 및 분할·공유

가. 책무의 판별

- 영국, 호주, 싱가포르 3개국의 개인책임성제도는 공통적으로 금융회사의 운영과 건전성에 핵심적인 기능으로 대상 임원들에게 배분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 내지 기능을 열거함
 - 영국 SM & CR 제도는 고위관리기능(CEO, CFO, CRO, 이사회 의장 등)을 통해 대상 임원을 판별하는데, 다른 지정책임 등을 배분받지 않는 경우 해당 기능의 관리가 고위관리자의 책임영역이 됨
 - 아울러 (i) SM & CR 제도 이행, 내부감사, 내부고발자 보호 등 법규 준수 및 건전성을 위해 의무적으로 배분해야 하는 지정책임을 열거하고, (ii) 고위관리기능 및 지정책임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회사의 활동, 사업영역 및 경영기능에 관해서도 책임을 배분토록 함
 - 호주 FAR 제도는 (i) 법령에 책임 및 직위를 열거해 해당 책임을 맡은 자가 대상 임원이 되며, (ii) 그 밖의 책임을 판별하기 위해 법률상 일반원칙을 두고 있음
 - 싱가포르는 핵심기능이라는 개념을 통해 고위관리자를 판별하는데, 그 예로서 핵심관리기능(최고경영진 등)을 열거함

〈표 10〉 대상 임원에게 배분해야 할 책임 내지 기능

구분	판별기준
영국	• 고위관리기능에 내재된 고유한 책임 + 지정책임 열거 or 총괄책임을 배분할 업무영역 예시
호주	• 규정책임·직위에 따른 책임 열거 + 일반원칙에 따른 책임 판단 관련 지침 제시 • 보조적으로 업권별 주요기능 및 주요 초점영역 등 제시
싱가포르	• 핵심관리기능 예시적 열거

- 해외 주요국과 유사하게 개정 법률 역시 시행령에서 ‘책무’의 내용을 열거하고 있으나 추가적으로 금융회사의 업종별·유형별 지침이나 업권별 모범안 등을 마련하여 수범자의 규제 준수를 도울 필요가 있음

- 2월 시행령안이 책무를 예시적으로 열거했던 것과 달리 최근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예시라는 문언 없이 책무를 (i) 지정 책임자 관련, (ii) 금융영업 관련, (iii) 경영관리 관련으로 나누어 열거함
 - 이는 수범자의 법적 불명확성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최근 시행령안에도 열거된 사항 외에 '그 밖에 금융관계법령등에 따른 책무'를 포함하고 있어 회사별로 해석·적용상 어려움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 제도 시행 초기 어려움을 덜기 위해 금융회사의 업종별·유형별로 참고할 수 있는 추가적 지침이나 업권별 모범안 마련 등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됨

나. 책무의 분할·공유

- 3개국 모두 원칙적으로 동일한 책임은 한 명의 임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책임의 분할 또는 공유를 인정함
 - 영국의 경우 사유가 정당하고 책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책임의 분할 또는 공유를 허용함(FCA Handbook SYSC 24.3.9G 및 PRA Supervisory Statement SS35/15)
 - 호주도 책임의 공유를 인정하되 연대책임 등을 규정하고(APRA·ASIC 2024b), 싱가포르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을 공유할 수 있다고 하면서 책임성이 희석되지 않도록 각 임원의 권한 범위 및 보고라인을 명확히 하고 책임성 원칙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함(FAQs)

〈표 11〉 책무의 분할·공유

구분	허용 여부	상세
영국	사유가 정당하고 책임의 공백이 없는 경우 책임의 분할 또는 공유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한 사유: 직무분할제도, 임원의 퇴임·취임 사이 인수인계, 특정 부서의 공동 운영 등 • 책임진술서/책임지도 기재 필요 + 책임 공유 시 각 고위관리자가 전적인 책임부담 • 영업행위감독당국인 FCA는 분할공유 모두 허용하나 건전성감독당국인 PRA는 책임의 공유만 허용
호주	책명의 공유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 공유 시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고 책임성진술서에 연대책임 명시
싱가포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 공유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책임성이 희석되지 않도록 각 고위관리자의 권한 범위 및 보고라인을 명확하게 하고 책임성 원칙이 충족되었는지 확인 필요

- 국내에서도 실질적으로 특정 책무 담당 임원이 여럿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책무의 분할 내지 공유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 개정 법률은 책무별로 담당 임원이 복수로 존재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리의무 이행에 대한 경각심·책임성 희석 및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중복을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당한 사유로 특정 업무분야를 책임지는 자가 여럿인 경우가 존재할 수 있음
- 해외 주요국 사례와 같이 실질을 반영해 책임 분할 내지 공유를 허용하되 문서화, 연대책임 명시 등으로 책임이 희석되거나 책임소재가 모호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4. '상당한 주의'를 다한 관리의무 수행

- 영국 및 호주는 개인책임성제도에 따라, 싱가포르는 별도 법령에 따라 대상 임원에게 각자의 책임영역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함
 - 영국은 '책임영역에서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시정하기 위해 취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치'의 이행을 요함(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2000)§66A(5), 66B(5))
 - 호주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지위·평판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중대한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함(FARA§21)
 - 싱가포르는 또한 책임성 판단 시 영국, 호주와 유사하게 대상 임원이 '문제를 인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함(Financial Stability Institution 2023)
- 사안별로 '합리적 조치'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지만 수범자 입장에서는 의무 위반 및 제재에 대한 불명확성으로 작용함
 - 3개국 모두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합리적 조치'의 판단기준 내지 고려사항에 대해 지침을 제공함

〈표 12〉 '합리적인 조치' 이행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구분	판단지침	예측가능성 제고방안
영국	감독규정, 감독해설서 형태로 판단지침 제공	• '취했어야 할 조치' 대비 '실제로 취한 조치' 관련 고려사항을 규정에 상세히 열거하고, 양자 간의 격차를 통해 판단
호주	법률에 규정	• 통제·위험관리, 책임위임 관련 안전장치, 문제식별·해결 절차, 위반에 대한 조치 등 • 세부지침은 없으나, 은행권의 경험을 통해 사례 등을 공유하고 대응조치를 권고함
싱가포르	별도 법령	• 주요 제재 사례 공개 등

○ 개정 법률상 제재 감면 요건인 '상당한 주의'에 관해서도 금융감독당국의 지침 등을 통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해야 함

- 개정 법률은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 시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관리의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하면서 어떠한 경우 이를 충족하는지 별도의 판단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상당한 주의'에 대한 판단기준은 수범자의 의무이행에 대한 행동기준을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므로 수범자가 입법 취지에 맞게 내부통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당국의 지침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 그 방안으로는 해외 주요국 사례 등을 참고하여 (i) 관리의무 위반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내지 기준을 제시하고, (ii)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금융업권에서도 회사 내부 또는 업계 차원에서 모범사례를 모아 공유하는 등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5. 차등적 규제 필요성

○ 영국, 호주, 싱가포르의 개인책임성제도는 금융회사의 규모 내지 유형에 따라 차등적 규제를 적용함

- 영국은 회사의 자산규모 및 회사 유형별로 규제를 달리 적용하는데, 예컨대 자산규모가 작은 보험회사¹¹⁾에는 책임지도 마련·제출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대상 임원 범위도 제한적임
- 호주는 자산규모에 따라 금융회사를 핵심회사 및 강화회사로 나누고 핵심회사에는 책임성지도 및 책임성진술서 마련·제출 의무와 기재 사항 중대 변경 시 고지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등 차등 규제함(APRA·ASIC 2024a)
- 싱가포르는 임직원 수가 50인 미만인 소규모 금융회사에도 가이드라인의 5가지 원칙¹²⁾을 적용하지만, 소규모 금융회사는 반드시 가이드라인 내의 세부지침(예: 임원 책임 및 경영구조 문서화)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규정해 유연한 적용을 허용함(IACG 서문)

11) 소규모 비지침회사(Non-Directive firms) 및 소규모 런오프회사(Small Run-off Firms)를 말함. 전자는 EU의 Solvency II 지침을 실행하지 않는 보험회사(통상 총수입보험료(Gross Premium Income) 500만 유로 미만, 총기술적준비금(Gross Technical Provision) 2,500만 유로 미만) 중 금융업 관련 자산가치가 2,500만 파운드 이하인 회사이며, 후자는 총기술적준비금이 2,500만 파운드 미만인 신계약 체결 허가를 상실한 회사를 말함

12) 싱가포르는 이른바 결과에 바탕을 둔 접근방식(Outcome-Based Approach)을 취하는바, IACG는 (i) 고위관리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ii) 중요위험인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iii) 모든 직원들의 행동기준을 증강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성취해야 할 5가지 결과를 제시하고 각 기본원칙 및 MAS의 기대 수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

〈표 13〉 차등적 규제

구분	차등 적용	상세
영국	자산규모 및 회사 유형별로 달리 적용	• 자산규모가 큰 보험회사는 소규모 보험회사에 비해 강한 규제가 적용되고(책임지도 마련·제출의무 등), 규모가 큰 보험회사라도 외국 보험회사 지점이나 특수목적회사 등 회사 특성에 따라 규제의 상세 내용이 달라짐
호주	자산규모에 따라 비례적 적용	• 회사 규모에 따라 핵심회사와 강화회사로 나누며, 책임성지도 및 책임성진술서 마련·제출의무 등은 강화회사에만 적용
싱가포르	임직원 수에 따른 차등 적용	• 50인 미만 금융회사는 5가지 결과 달성은 적용되나 세부지침은 미적용

○ 국내에서도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책무구조도 마련·제출의무를 완화하는 등 회사 규모, 업종 특성 등에 따라 차등적 규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개정 법률은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모든 금융회사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세부 규제에 관해서도 이사회 구성 관련 특례를 적용받는 소규모 금융회사에 대해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의무를 면제하고 있을 뿐임
 -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 구조가 단순하고 임직원 수도 적어 책임성을 파악하기 용이함에도 규모가 큰 금융회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면 불균등한 규제 부담과 과도한 비용으로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음
- 해외 주요국과 같이 회사 규모와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규제를 달리 적용해 규제의 비례성 및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향후 금융감독당국, 금융업계, 학계 등 다양한 주체들 간에 활발한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사료됨

6. 맺음말

○ 금융회사의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내부통제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 도입의 시작점에서 본고는 아래와 같이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함

- (임원의 범위) 사외이사 중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장 등 포함 여부에 대한 입법적 논의가 필요하며,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 '임원에 준하는 직원'은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분야에 실질적으로 권한을 갖는 경우 등만을 의미하도록 법령해석, 지침 등으로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적극적 자격요건)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상 임원의 자격요건 충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전문성, 업무경험, 전문성 및 신뢰성의 각 의미, 판단기준 및 판단근거 등에 대해 지침이 마련되어야 함
- (책무의 판별 및 분할·공유) '책무'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 금융회사의 업종별·유형별 지침이나 업권별 모범안 등을 마련하여 수범자의 규제 준수를 도울 필요가 있음

- 특정 책무에 관해 실제로 담당 임원이 둘 이상인 경우, 책임이 희석되거나 책임소재가 모호해지지 않도록 문서화, 연대책임 명시 등 방안 시행을 전제로 책임 분할 내지 공유를 허용해야 함
 - (상당한 주의) (i) 제재 감면 요건인 '상당한 주의' 판단 시 고려할 요소 내지 기준을 제시하고, (ii)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방안 등을 통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해야 함
 - (차등적 규제) 소규모회사에 대해서는 책무구조도 마련제출의무를 완화하는 등 회사 규모 및 업종 특성 등에 따라 규제를 달리 적용하여 규제의 비례성 및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금융감독당국은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한 후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운영지침 등을 마련할 예정임(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 6. 11),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보험업계에서는 제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명확하고 합리적인 해석과 지침이 마련되도록 규제 준수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제도의 지속적 개선·발전을 위해 감독당국, 금융업계, 학계 등 다양한 주체들의 심도깊은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됨

참고문헌

국회 정무위원회(202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APRA·ASIC(2024a), Regulatory Guide 279, Financial Accountability Regime: Information for accountable entities

_____ (2024b), Financial Accountability Regime: Accountability statement guidance and template

FCA(2018), PS18/15, Extending the Senior Managers & Certification Regime to insurers – Feedback to CP17/26 and CP17/41 and near-final rules

Financial Stability Institution(2023), “FSI Insights on policy Implementation No. 48, When the music stops – holding bank executives accountable for misconduct”

부록

해외 제도 관련 법령·지침 목록

〈부록 표 1〉 해외 주요국 개인책임성제도 관련 법령 및 지침

구분	규제 당국	법령 및 지침
영국	Financial Conduct Authority(FCA),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P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inancial Services Markets Act 2000 • FCA Handbook: SYSC, FIT, Depp, SUP • PRA Rulebook: Insurance - Senior Management Functions, Insurance - Fitness and Propriety, Insurance - Allocation of Responsibilities • FCA(2019), The Senior Managers and Certification Regime: Guide for insurers • FCA(2019), FG19/2, Senior Managers and Certification Regime: Guidance on statements of responsibilities and Responsibilities Maps for FCA firms • PRA(2021), Supervisory Statement, SS35/15, "Strengthening individual accountability in insurance"
호주	Australia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APRA), Australian Securities & Investments Commission(AS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inancial Accountability Regime Act 2023 • Financial Accountability Regime (Minister) Rules 2024 • Financial Accountability Regime (Regulator) Rules 2024 • APRA·ASIC(2024), Regulatory Guide 279, Financial Accountability Regime: Information for accountable entities • APRA·ASIC(2024), Financial Accountability Regime: Accountability statement guidance and template
싱가포르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M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uidelines on Individual Accountability and Conduct • Frequently Asked Questions(FAQs) on Guidelines on Individual Accountability and Conduct

저자약력

양승현 워싱턴 주립대학 로스쿨 법학석사, 변호사 / 연구위원
E-mail : shyang@kiri.or.kr

박정희 고려대학교 경영학 석사 / 선임연구원
E-mail : pjh@kiri.or.kr

CEO Report 2024-03호

보험회사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 책무구조도 도입을 중심으로

발행일 2024년 6월

발행인 안철경

발행처 보험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인쇄소 경성문화사

ISBN 979-11-93021-41-5

